

의안검토보고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. 7. 4. 광영교 의원 외 5인
2. 건명 :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불임참조
4. 검토의견 : 불임참조

위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7월 20일

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
전문위원 권태환

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검 보 고

본 안건은 2007. 7. 4 광영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. 7. 5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 공포(2007. 5. 11)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중 개정된 법률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의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5조, 제9조의2, 제9조의3, 제9조의5, 제17조)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내용중 「지방자치법」과 관련 있는 조항의 법조항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
-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